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11년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(법률 제20710호, 2025. 1. 21. 공포, 2025. 4. 22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용어 정비(안 제5조의2)

- 1)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용어를 정비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2) 입법예고 : 입법예고 전
 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각각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63조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66조,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25조의6, 「새마을금고법」 제33조,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7조, 「산림조합법」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.

④ -----

재무상태표 -----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528